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0. 5. 14(금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0. 5. 14(금) 09:30	담당부서	예산실 예산제도과
담당과장	문성유 (2150-7130)	담당자	최용호 사무관(2150-7032)

제목 :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를 위한 Ten-Ten 전략 추진 -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 확정·통보

-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재정 건전화와 함께 위기이후 제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
 - “Ten(재량지출 10% 구조조정) - Ten(지출효율화 10대 원칙) 전략”을 적극 시행키로 하고
 - 「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」을 각 부처에 통보 하였음 (5.14일)
- 금번에 통보한 세부지침은 지난 5.9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략임
 - 재정의 비효율과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면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차질없이 공급하는 동시에
 - 확보된 재원은 녹색성장, 일자리 창출, 민생안정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적극 활용
- Ten-Ten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 1. 재량지출의 10% 구조조정 추진
 -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Zero-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,
 - 성과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10% 이상 감액 조정
 - 유사·중복사업에 대한 과감한 통합·정비 지속 추진
 - 경제위기시 도입한 한시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재점검 등

2. 사업추진의 모든 단계에 걸쳐 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준수

【기획·요구 단계】

- ① (타당성 검증 강화) 예비타당성조사, 타당성재조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
- ② (재정지원 필요성 점검) 재정지원에 앞서 민간·지자체에 의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우선 점검
- ③ (사전협의 내실화)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은 「위기관리 대책회의」 등에 상정을 의무화
- ④ (총비용 검토) 신규 장비·시설은 직접투자비 외에 운영인력, 관리비를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

【편성 단계】

- ⑤ (전략적 자원배분)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
- ⑥ (PAYGO 원칙) 신규 의무지출 추진시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자원대책 제시를 의무화
- ⑦ (보조사업 일몰제) 국고 보조사업은 도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일몰제를 도입

【집행·평가 단계】

- ⑧ (전달체계 정비) 재정사업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예산누수를 예방
- ⑨ (사업간 네트워킹 강화 및 비용절감) 유관사업을 연계 추진하고, 신공법 도입 등 비용절감방안 강구
- ⑩ (성과정보 활용) 성과평가 결과, 외부기관 지적 등을 예산요구 및 편성과정에서 적극 반영

【별첨】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이 자료는 2010년 5월 14일(금)
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

2010. 5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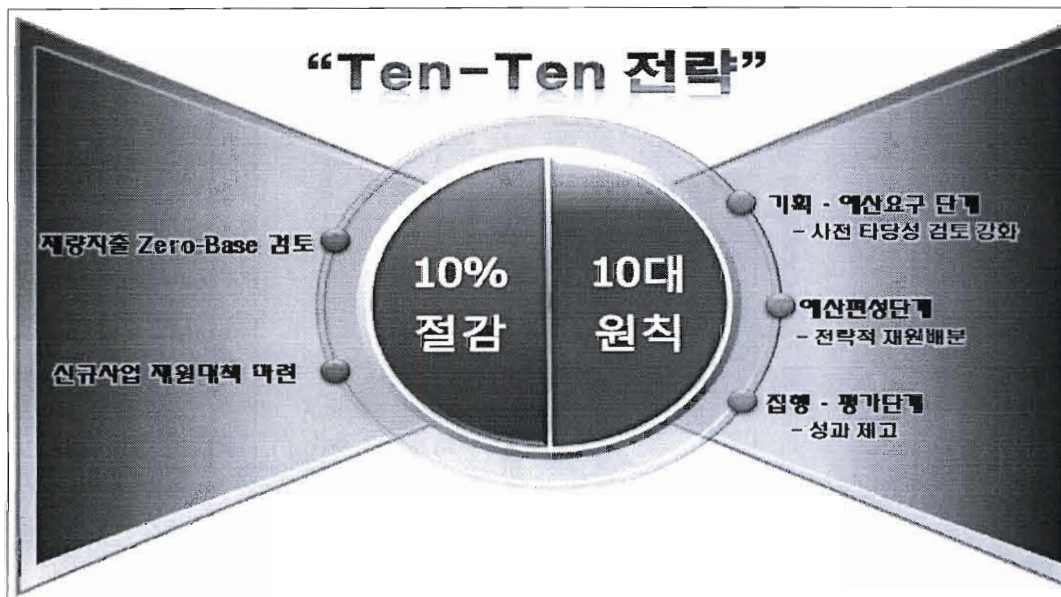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추진 전략	1
III. 주요 내용	2
1. 재량지출 10% 구조조정	2
2. 지출 효율화 10대 원칙 주요 내용	4
IV. 인센티브제 시행	9

I. 추진 배경

- 최근 서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,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강조
 - 이와 함께,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의 paradigm shift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필요
 - 재정 건전화와 함께 위기이후 제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이 요구되는 상황
 - 재정의 비효율과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차질없이 공급
 - 확보된 재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
- ⇒ 이를 통해, 재정건전화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

II. 추진 전략 : Ten - Ten 전략 추진



Ⅲ. 주요 내용

1. 재량지출의 10% 구조조정 추진

- 모든 재량지출을 Zero-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량지출의 10%를 구조조정
 - 일률적 10%감액보다는 사업별 우선순위, 성과 등을 평가하여 구조조정 추진 (사업별 감액을 차등적용 가능)
 - 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사업은 그 효과 및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구조조정
 - 성과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10% 이상 삭감
 - 유사·중복사업은 과감한 통합·정비를 지속 추진
 - 관서운영비·업무추진비·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증가를 억제
-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

<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>

- 의무지출 : 법령 등에 지출의무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수혜대상, 사업물량, 단가 등의 축소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비*

* 교부금, 채무상환, 법정부담금(연금, 건강보험), 사회보장 및 소득보전지출, 이지지출 등

- 재량지출 : 투자사업비,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이 아닌 경비

- ① 공기별 필수소요 반영에 따른 연차적 자연감소분
- ② 단년도 사업, 주기적 시행사업의 자연완료·감소분
- ③ 재원절감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회계·기금 이관
 - * 일반회계 추가전출없이 기금으로 사업이관시 구조조정에 포함
- ④ 전제가 되는 법령의 제·개정, 폐지 등에 따른 사업종료
 - * 주무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포함
- ⑤ 금리하락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 감소 등 환경·여건변화에 따라 당연히 감축·종료되는 경우
- ⑥ 유사사업간 단순 통폐합으로 예산절감이 없는 경우
 - * 통폐합으로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 절감분은 구조조정에 포함
- ⑦ 기타 시행부서의 의지가 전혀 없어도 종료·감축되는 경우
 - * 재정용자사업을 민간이차보전으로 전환한 경우 구조조정에 포함

2. 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주요 내용

기획·요구 단계

(1) 타당성 검증 강화

- 재원이 수반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, 타당성재조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
 -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후 예산을 요구
 - 수요 감소 등 여건변화로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, 사업 중단 여부를 면밀히 검토
 - 총사업비가 20% 이상 증가한 경우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

(2) 재정지원 필요성 점검

- 재정지원에 앞서 민간·지자체에 의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우선 점검
 -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주민밀착형 사회복지·교육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수행 유도
 -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(BTO) 추진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
 - * (예시) 도로, 항만, 화물터미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
 -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동일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
 - 민간단체 공익활동, 민간기부, 자원봉사 등 자발적 민간참여를 장려
 - * (예시)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, 재해복구 참여확대 등

[3] 사전협의 내실화

- 중장기 대규모 재정소요에 대한 사전협의 준수
 - 대규모(연간 500억원, 총지출 2,000억원 이상) 재정이 소요되는 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(경제정책조정회의) 등에 상정 의무화
 - 사전협의를 미이행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
 - * 「재정지출 수반 중장기협의지침」 참조 (4. 23, 개정·통보)
 - 재정수반 정부입법안은 국회 심사과정 등에서 변경되는 경우 소관부처는 재정당국과 재협의
 - * 국가재정법 제87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) 참조

[4] 총비용 검토

- 신규 장비·시설은 직접비 외에 운영인력, 관리비를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
 - 각 부처는 인력충원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, 정기직제 개정 요구내용과 연계하여 작성
- R&D 및 정보화 관련 시설·장비는 추가적인 신규투자 없이 기존 시설이나 범부처 공동장비 활용이 가능한지 심층 검토
 - *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연구장비(전자현미경, 핵자기 공명장치, 질량분석기 등)에 대해서는 공동활용 가능성 우선 검토

[5] 전략적 자원배분

-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
 - 저탄소 녹색성장 등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추세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종의 원칙*에 따라 지원
 - * R&D 분야는 선진국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다 투자하기 보다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
 - 완공위주의 사업비 지원으로 계속사업을 적기 완료
 - 수혜자의 입장에서 사업이 여타 부서·기관, 지자체, 민간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점검
 - 유사사업은 사업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제고, 중복사업은 통합
 - 사후 재해복구 보다는 사전예방 투자를 강화

[6]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자원대책 의무화 (PAYGO 원칙)

- 신규 의무지출 추진시 기존 의무지출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자원대책을 마련
 - 기존 의무지출도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, 법 개정 등 구조조정 추진
 - 의무지출의 재정소요를 정밀 검토하여 과도한 예산편성 지양

[7] 보조사업 일몰제

- 보조사업은 도입후 일정기간(3년)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종료하고, 존속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사업을 연장 (Negative System)

< 일몰 대상(예시) >

- i) 당초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 기능을 통해 자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사업
- ii) 그동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 등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
- iii) 여건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미약한 사업
- iv)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
- v)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

집행 · 평가 단계

[8] 전달체계 정비

- 재정사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예산누수를 예방
 - (복지)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확충, 부정 의료수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·중복수급 방지
 - (농업) 개별 농가단위 직접보조에서 시설·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접보조 방식으로 전환
 - * (예시) 개별농가의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는 방식에서, 공동활용이 가능하고 농가부담이 적은 농기계 임대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검토
 - (R&D)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연구과제 중복 방지
 - (정보화)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전산장비 통합구매·운영 확대

[9] 사업간 네트워킹 강화 및 비용절감

- 성격이 유사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서로 연계를 강화
 - 일자리, 중소기업 분야* 등 긴밀하게 연관된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제고
 - * (예시) 정부 일자리사업간 교육훈련-단기일자리-취업지원서비스간 연계 강화,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R&D·자금·전문인력을 연계하여 지원
 - 연구개발 투자 등은 산·학·연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
- 정해진 사업규모를 최소의 비용으로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
 - 신공법 도입, 입찰방식 개선, 정확한 원가계산, 물량·단가 산정방식 개선, 아웃소싱 등 비용절감 방안 강구

[10] 성과정보 활용

- 성과 평가,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
 - 재정사업 평가(K-part) 결과, 우수 사업은 증액하고 미흡 사업은 '10예산 대비 10% 이상 삭감
 - 국회·감사원·언론·시민단체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·폐지
- 집행부진 사업
 - 연례반복적 집행부진 사업은 이월예상액을 포함하여 집행가능한 예산현액 수준으로 사업비 규모를 축소
 - 집행부진이 전년도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부진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 한해 사업비 반영

IV. 인센티브제 시행

- 개별 부처의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노력과 기본경비를 연계시키는 인센티브제 시행
 - 각부처의 '11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 「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추진 현황」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기본경비 추가 증액 및 감액(3%수준) 검토

- 또한 부처의 이행실적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각부처와 재정당국간 예산협의 과정보다 차별화하여 운영
 - 생산성 제고 실적이 우수한 부처는 예산협의시 부처의견을 최대한 존중
 - 생산성 제고 실적이 미흡한 부처는 예산 협의·보완시 강제 구조조정 추가 시행